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외래진료(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외래진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외래진료”로, “구입한 의약품 비용”을 “발생한 의약품등구입비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구입한 의약품 비용”을 “발생한 의약품등구입비용”으로 한다.

1. 1회의 입원진료 비용과 그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법 제10조제1항 제2호 각 목의 의약품·의료기기 구입비용(이하 “의약품등구입비용”이라 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심의위원회가”를 “보건복지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5배”를 “100분의 250”으로 한다.

제15조제4호 중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을 “공단이 인정한”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단(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법 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는 제외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2호에 한한다.

1. 법 제19조에 따른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협조 등에 관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체납처분 승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에 따른 조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③ 법 제10조제1항 각 목의 의료기관 등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직접 지급 신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

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재난적의료비) ① (생략)	제3조(재난적의료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한다.	② ----- ----- -----.
1. 1회의 입원진료(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입원진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비용과 그 진료과정에서 구입한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의약품 비용(이하 “의약품 비용”이라 한다)	1. 1회의 입원진료 비용과 그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법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의약품·의료기기 구입비용(이하 “의약품등구입비용”이라 한다)
2. 최종 외래진료(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외래진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전 1년 이내에 동일한 질환의 치료를 위한 외래진료에서 발생한 비용과 그 진료 과정에서 구입한 의약품 비용	2. --- 외래진료 ----- ----- ----- ----- 발생한 의약품등구입비용
3.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의 입원진료와 외래진료가 동일한 질환에 대한 일련의 치료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3. ----- ----- ----- ----- -----

해당 입원진료·외래진료 비용
및 각각의 진료과정에서 구입
한 의약품 비용

③ (생 략)

제4조(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
원회의 운영) ① 법 제7조제1항
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5
호에 따른 위원은 그 직(職)에
있는 동안 재임(在任)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
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이 다
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
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발생
한 의약품등구입비용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
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 소집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
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
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
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보건
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
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
명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
한다.

제5조(실무위원회에 대한 위임사
항)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심의
위원회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

<삭 제>

업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하는 사항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 필요성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공단 이사장이 공단 분사무소 분포 현황을 고려하여 정하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둔다.

1. 제5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
2.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지급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지역별로 공단 이사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4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삭 제>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의료법」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지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의약 관련 협회·학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0명 이내

나. 공단 소속 의사 1명

2. 사회복지분야에서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이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이내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6명 이내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공단 직원 1명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다.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출연하거나 지원하는 관련
법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
람 4명

라. 해당 분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도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1명

5. 그 밖에 사회복지 관련 단체
에서 5년 이상 근무 또는 활
동하고 있거나 근무 또는 활
동하였던 사람으로서 사회복
지 전반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실무위원회의 관할에 소재하는
공단 분사무소의 장이 제2항의
위원 중에서 10명 이내의 위원을
선정한 후 이들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 호에 해당
하는 인원 이상 반드시 선정하
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2명
2.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1명
3. 제2항제3호, 같은 항 제4호라
목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

른 위원: 1명

4. 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
른 위원: 각 1명

5. 제2항제4호다목에 따른 위원:
1명(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출연하거나 지원하는 관
련 법인·단체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회의마
다 그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정한다.

제8조(외래진료 지원대상 등) ① <삭 제>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이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및 희
귀난치성질환 등 치료과정에서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할 가능성
이 높은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u>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u> <u><신 설></u>	4. ----- --- <u>공단이 인정한</u> --- 1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단(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법 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는 제외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건강에 관한 정보는 나목에 한한다. 1. 법 제19조에 따른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협조 등에 관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7조제1
--	---

<u>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u> <u>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u> 1.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체납 처분 승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에 따른 조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③ 법 제10조제1항 각 목의 의료기관 등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직접 지급 신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